

공정위, '97 국정감사 주요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수)에 열린 1997년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위원회에 5개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였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97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중점주진방향

- ◇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경제규제개혁을 적극 추진
- ◇ 대규모기업집단의 치입에 의한 무리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
- ◇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
- ◇ WTO와 OECD를 중심으로 한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 논의에 적극 대응
- ◇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고 고객만족행정으로 대민 서비스를 강화

I. 경제규제개혁의 적극 추진

〈경제규제개혁의 기본방향〉

- 정부의 시장가입을 축소하여 경쟁촉진을 도모
- 시전적 규제를 사후적 감시로 전환하는 등 규제 개혁 수단을 합리화하여 원활한 개혁을 추진
- 개별과제 위주의 단편적 접근보다는 건축, 산업 입지 등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규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접근
- 개방화, 세계화추세에 따른 경쟁라운드에 대비하여 우리의 규제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1. 그 동안의 추진실적

1. 상반기 중에는 기업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8개 분야, 28개 과제를 우선추진과제로 선정하여 개혁을 추진
 - 1) 기업창업 및 공정입지 관련규제의 완화
 - ① 주거지역에 비공해 소규모공장의 설치 허용 범위 확대
 - ② 첨단산업시설의 신·증설에 대한 규제 완화
 - ③ 개별공장의 입지규모 제한 완화

2) 진입규제의 획기적 완화

- ④ 전력산업의 진입규제 완화
- ⑤ LNG 수출입승인제도 폐지
- ⑥ 전기공사업 면허제도 개선
- ⑦ 축산업의 허가·등록제 개선
- ⑧ 양곡도정업 등록제도 개선
- ⑨ 항공산업의 신규노선 진입제한 완화
- ⑩ 시공업체 소속 건축사의 설계업무 허용

3) 물류시설 관련규제의 완화

◇ 그동안 제조업 우선정책으로 인하여 물류시설이 입지, 세제, 부담금 등의 측면에서 불리하게 취급되어 물류비용 상승 및 산업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

- ⑪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업체의 입주제한 완화
- ⑫ 녹지지역내 창고시설 건축제한 완화
- ⑬ 농수산물물류센타의 설치규제 완화
- ⑭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 ⑮ 물류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4)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관련규제의 완화

- ⑯ 회사채발행제도 개선
- ⑰ 유상증자 물량제한 규제 완화

5) 품질인증·검사제도의 개선

- ⑱ 자동차 안전검사제도 개선
- ⑲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제도 개선
- ⑳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개선

6) 건축관련 규제의 완화

- ㉑ 건축관련 심의제도 간소화

- ㉒ 공장구내 가설건축물의 설치규제 완화

7) 기업부담경감을 위한 관련규제의 정비

- ㉓ 각종 영향평가제도 개선
- ㉔ 입찰보증금제도 개선

8) 사업자단체관련 규제의 완화

◇ 공정위에 신고된 중앙단위의 623개 사업자단체 중
• 단체 설립이나 회원가입의 강제, 단체에 의한 가격 결정 등을 행하고 있는 57개 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경쟁제한적인 관행 및 제도를 정비

- ㉕ 사업자단체의 설립·가입 및 회비납부 자율화

- ㉖ 사업자단체의 가격규제 개선

- ㉗ 영업활동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감시 폐지
- ㉘ 기타 사업자단체에 의한 규제 완화

2. 국민생활 및 중소사업자들에게 불편과 부담이 큰 3개 분야, 12개 과제의 개혁방안 마련 (10. 2 경제규제개혁위원회 의결)

1) 중소사업자 관련 규제의 완화

- ① 중소기업의 근저당설정시 국민주택채권의 무매입 면제
- ② 전기·전기통신공사업자의 공제조합 의무 출자제도 완화
- ③ 인쇄소 등록요건 완화
- ④ 자동차운수사업의 신규면허 및 증차시 충당 되는 차량의 차령제한 완화
- ⑤ 컴퓨터게임장의 설치 및 이용요금 규제 완화
- ⑥ 옥외광고물의 광고내용 변경절차 간소화

2) 국민불편 관련 규제의 완화

- ⑦ 건축물 철거관련 절차 개선
- ⑧ 건축물 용도변경시 필요한 도면의 작성 자격자 범위 명문화
- ⑨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회관의 사용료등 징수제도 개선
- ⑩ 장애인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절차 개선

3) 공동주택 관련 규제의 완화

- ⑪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제도를 개선
- ⑫ 공동주택 복리시설 증축절차를 간소화

2. 그 동안의 규제개혁실적 평가

1. 긍정적 측면

- 1) 진입규제, 창업, 물류, 품질인증, 자금조달 등 8개 분야, 28개 과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수립
· 확정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애로요인을 단기 간내 상당부분 해소
- 2)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합리적 개편으로 피규제자 입장에서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관계부처가 전향적인 자세로 규제개혁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

2. 미흡한 측면

- 1) 기업의 고충처리적 성격의 단위과제 위주의 개혁으로 인해 국민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개혁에는 미흡
- 2)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기득권 보호를 위한 이익집단의 저항과 반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

3. 향후 추진계획

- ◇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에 대한 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
- ◇ 이익집단의 반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일반 국민과 언론의 지지를 확보토록 노력

1. 경제구조 선진화를 위한 핵심과제의 개혁을 추진

-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덩어리” 규제 위주로 11개 분야를 핵심과제로 선정

〈대상분야(11개)〉

-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혁이 시급한 분야(6개) : 물류·운수, 건축, 건설, 유통, 정보통신, 주류
- 2) 복잡한 “덩어리” 규제의 정비가 시급한 분야(2개) :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 환경
- 3) 경쟁라운드에 대비하여 정비가 필요한 분야(1개) : 개별법근거 카르텔(59개 법률·72개 제도)
- 4) 기타 경쟁제한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분야(2개) : 전문자격서비스, 수출입관련규제

- 동 과제는 KDI, 국토개발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에서 현재 연구를 진행 중

-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 건축, 정보통신 등 4개 분야에 대해 공청회개최 등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규제개혁방안을 마련

- 건설, 유통, 전문자격서비스 등 나머지 분야는 '98 상반기중 개혁방안을 마련

2. 규제전수조사 및 규제일몰제 작업을 추진

- 재경원, 통산부 등 19개 경제관련 부처·청으로부터 기관별 규제전수현황과 규제개혁계획을 접수(총 규제건수: 6,915건)

- * 일반행정 및 사회관련 부처·청(19개)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접수

□ 작업대상

- 부처별 규제건수 산정기준을 통일하여 규제총수를 정확히 조사
- 상위법령의 근거여부 및 위임범위 일탈여부 심사
- 규제의 경쟁제한성이나 타당성 등 내용을 실체적으로 심사
- '97 하반기에는 작업량·시간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의 근거여부 및 위임범위 일탈여부의 심사에 중점

II.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지속적 추진

1. 경제력집중 현황 및 자율시정 여건

1) 경제력집중 현황

- 30대 집단의 국민경제상 비중, 계열사 및 영위업종수가 증가추세

	'93	'95	'96	'97
-국민경제상비중(%)*	38.1	40.7	-	-
-평균계열사수(개)	20.1	20.8	22.3	27.3
-평균영위업종(개)	18.3	18.5	18.8	19.8

* : 광공업출하액 기준 30대 집단의 절유비중임

- 차입에 의한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재무구조가 크게 취약

('96말 기준, %)

	제조업 평균	30대	미국 ('95)	일본 ('95)	대만 ('95)
-부채비율	335.6	386.5	159.7	206.3	85.7
-자기자본비율	24.0	20.6	38.5	32.6	53.9

-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주요시장을 독과점

	'95	'96	'97
-시장지배적 품목 중 30대 집단의 비율	59.4%	64.3%	70.5%

- 동일인 중심의 소유·경영으로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
- 동일인은 평균 3.7%의 소유지분으로 40~50개 계열사를 지배

	내부지분율				기타
	동일인	특수관계인	계열사	계	
소유지분	3.7%	4.8%	34.5%	43.0% ¹⁾	57.0%

- 주요 의사결정을 동일인의 권위적·자의적 판단에 의존
- 계열사간의 채무보증,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한계기업의 퇴출을 저해하여 구조조정을 시키고 공정경쟁을 저해

2) 경제력집중 폐해의 자율시정 여건

- 자본시장·상속·증여세제 등의 미흡으로 소유집중 및 경영권 세습
- 금융개혁, M&A시장의 활성화도 이제 시작 단계에 있어 기업경영에 대한 외부감시기능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려움



- ◇ 이와 같이 경제력집중 문제가 자율시정될 수 있는 여건은 미성숙
- ◇ 따라서 기업경영의 투명성, 지배구조의 선진화, 금융 출판행의 개선 등 자율시정여건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

2.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지속적 추진

1) 출자총액제한 및 채무보증제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

- '97 대규모기업집단의 타회사 출자는 '96년에 비해 다소 증가

(단위 : 10억원, %)

연도	'96.4	'97.4	증감(비율)
· 순자산액(A)	54,829	61,343	6,514(11.9)
· 출자총액(B)	13,572	16,876	3,304(24.3)
· 출자비율(B/A)	24.8	27.5	2.7

- 채무보증비율은 '97. 4월 현재 47.0%로 '9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단위 : %)

연도	'93.4	'94.4	'95.4	'96.4	'97.4
비율	342.3	169.3	95.2	55.9	47.0

- 출자 및 채무보증한도 초과금액의 해소를 적극 유도
 - '97. 4. 1현재 출자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회사는 27개 기업집단 171개사로 초과금액은 1조9,798억원이며, 채무보증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회사는 24개 기업집단 80개사로 초과금액은 6조6,789억원임
 - 이들 회사의 주식소유 및 채무보증 현황을 점검하여 법정 유예기한('98. 3. 31) 내에 차질없이 해소하도록 유도
- 출자총액제한 · 채무보증제한 등을 회피하기 위한 미편입계열회사를 철저히 조사 · 시정함으로써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실효성을 확보

2)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조사 · 감시활동을 강화

- 작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시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으로 기존의 상품 · 용역 뿐만 아니라 자금 · 자산 · 인력분야의 지원행위도 포함
- 이에 따라 자금 · 자산 · 인력분야의 부당지원 행위의 규제내용을 객관화 · 구체화하기 위하여 「부당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제정('97. 7)
- 중점심사대상을 규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부당지원행위를 시정

〈중점 심사대상〉

- 지원주체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이고
- 지원객체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며
- 지원크기가 일정규모(지원금액 년 1억원 이상등)인 경우

- 부당한 지원행위의 판단기준을 구체화

3.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경쟁적 시장구조로 개선

- 우리 나라 상품시장의 구조는 점차 경쟁형으로 변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서는 독과점 시장구조가 고착화되는 경향
-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된 26개 품목을 「우선개선 대상품목」으로 선정('96. 11)
- 앞으로 독과점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
 - 주요독과점 품목, 지역독과점, 다국적기업 등에 대한 실태분석을 전문연구기관에서 국책연구과제로 연구중

4) 기업결합 제도의 효율적 운영

- 규제완화, 개방화추세에 대응한 구조조정차원에서 기업결합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

- * '93~96년 연평균 증가율 : 46%
- 기업들의 구조조정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작은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 기준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기업결합제도를 개선
 - 기업결합신고기준 상향조정 :
 - (자산총액 200억원→1,000억원 이상)
 - 간이신고제 도입 :
 - (제출서류 간소화 및 심사기간 단축)
 - 기업결합신고를 원칙적으로 사후신고로 전환
- * 시장지배적사업자등의 합병·영업양수 등에 한해서만 사전신고
- 한편,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은 엄격히 규제해 나가되, 국제경쟁력강화 필요성 등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심사제도를 개선

III.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보호기능의 강화

1. 공공부문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

- 거래상대방에게 우월적지위를 갖는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노력을 강화
-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통한 민간부문의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금년에도 7개 주요 정부투자기관 및 1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실태조사 중

2.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

- 기업간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사업자 간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입찰담합과 관련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할 계획
 - 가격담합, 정부발주공사 및 물품구매시의 입찰담합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
 -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찰담합의 경우 증거수집 등 조사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정보수집체계를 구축

3. 사업자의 우월적지위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

- 최근 확산되고 있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분야에 있어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97. 4)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 가맹사업자의 재무상태, 사업경력 등의 정보를 가맹계약자에게 제공치 않는 경우
- 계약 종료 후 기맹계약자로 하여금 경쟁사업의 종사를 금지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 가맹점포의 실내외설비의 설치를 특정인에게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등

- 백화점업자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여 중소입점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백화점고시의 개정을 추진 중
 - 『백화점업의 유통거래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정시안을 마련한

후, 관계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시개정을 추진('97. 12)

4.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

- 원사업자의 도산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년 4. 1부터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
- 하도급법상 과정금부과기준을 제정·시행 ('97. 6)
 - 동 과정금 부과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과정금 부과대상, 방법 등의 내부기준을 제정·시행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

5.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

-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발전
 - 소비자피해가 많고 소비자가 오인하기 쉬운 분야에 대한 표시·광고지침을 제정
 - 그동안 주택, 환경, 금융상품, 상가분양 및 임대, 수상·인증 등 5개 분야에 대한 표시·광고지침을 제정·시행
 - 앞으로 보험상품, 통신판매 등에 대한 표시·광고 지침도 제정할 계획
 - 「비교 표시·광고 등에 관한 공정거래지침」 제정을 추진
 - 가칭 「표시·광고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검토

* 소비자에게 중요한 내용의 표시·광고 의무화, 정보공개명령, 광고실증제 등의 도입을 검토

- 사업자의 자율적 시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품, 의약품 등 18개 분야의 공정경쟁규약을 승인·시행

- 분쟁과 민원이 많은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병원 이용, 은행여신거래, 백화점 임대차 등 6개 분야에 대한 표준약관을 승인·보급하는 등 표준약관 보급을 확대

- 앞으로 주차장 이용, 제2금융권 여신거래, 회원제시설 이용분야 등에 대한 표준약관을 승인·보급할 계획

- 개별적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및 불공정한 약관을 지속적으로 조사·시정

- 유통시장의 개방에 대응하여 할인특매(세일) 기간제한 폐지

- 소비자의 선택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판촉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경품규제 완화 ('97. 1)

- 일정규모 이하 기업의 경품제공행위 자율화
 - 제조업: 연간 매출액 100억원 미만
 - 기타: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
- 공개현상경품제공의 총액한도 폐지
 - (종전 1,500만원)

IV. 경쟁정책의 국제적 논의에 적극 대응

1. 경쟁정책 규범화의 국제적 논의 동향

- WTO체제의 출범으로 세계경제가 통합화되어 감에 따라 국제규범과 관행의 단일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
- 이에 따라 OECD「경쟁정책위원회」와 WTO 「무역과 경쟁작업반」을 중심으로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 논의가 활발히 전개
 - OECD 「경쟁정책위원회」는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의 첫단계로 '96. 10월 이후 가격담합 등 경성(hard core) 카르텔의 금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를 본격화
 - WTO는 '96. 12월 싱가폴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무역과 경쟁 작업반」(working group)을 설치하여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

2. 대응방향

- 경성카르텔 등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적극 대응
 - '97. 2월 위원회에 「경쟁정책 국제규범화 대책반」을 설치하여 부처간 의견을 조정하고 대응방안 수립
 -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심층 연구
 -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대한 민간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경쟁정책 세미나 개최
-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 논의에 적극 참여 및 국제간 협력체제의 강화

V.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및 대민 서비스 강화

1.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소회의제도를 도입·운영 ('97. 4)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공정거래모니터제도를 도입·운영 ('97. 6)
-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사업자 및 일반국민들의 이해증진과 자율준수분위기 확산을 위해 교육·홍보를 실시
 -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령의 개정내용, 개정 할인특매고시 등 공정거래제도 전반에 걸쳐 교육을 실시
 - 대규모기업집단 및 표시·광고 관련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총 88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총 6,395명 참가)
- 일간지의 「경제교실」란에 공정거래제도 설명을 연재하는 등 언론을 통한 홍보 적극 추진
-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영문 소개책자를 발간하여 주한외국대사관, 외국경쟁당국 등에 배포

2.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제정·시행 ('97. 6)
-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96년 공정거래법 개정시 법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

한 경우에는 검찰고발을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법 제71조제2항)

- 고발대상이 되는 사건의 유형 및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고발지침을 제정·시행
-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징금 산정을 위해 『과징금 산정방법 및 부과지침』을 제정·시행('97.4)
-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효율적인 정보수집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
- 부당내부거래, 위장계열사 조사와 관련된 정보수집을 위해 국세청 및 증권 감독원 등과의 정보교류채널을 구축
- 대기업의 중소기업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관련 불공정거래 정기실태조사』에 공정거래위원

원회가 참여

- 입찰담합, 고발 등 공정거래 관련사건의 검찰소유 정보의 효율적 수집을 위해 「공정거래사범협의회」를 적극 활용

3. 대민 서비스 강화

-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정보제공에 있어 국민편의 제고를 위하여 전산망을 통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개시('97.4)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법령 및 제도 안내, 사건신고와 관련한 편의 제고를 위하여 공정거래 상담제도를 활성화

'97 공정거래관련법규집 발간

본 협회는 지난 4월 15일 각종 공정거래관련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한 『'97 공정거래관련법규집』을 출간하였다.

『'97 공정거래관련법규집』은 지난 해 12월에 개정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약관법과 이에 관련된 고시 및 지침의 개정내용을 모두 수록하였으며, 관련된 기타법령과 중요한 공정거래용어의 해설도 수록하였다. 또한 부록편에는 공정거래제도의 변천연혁과 공정거래 법적용제외대상 및 과징금제도, 공정거래사건처리절차 등을 수록함으로써 기업인은 물론 법령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 『'97 공정거래관련법규집』의 판매가는 30,000원이며, 구입신청 및 문의는 T. 775-8870~2(조사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